특약 변경 보고서

1. 약관명 :『연금하나 통장』특약

2. 변경 시행일 : 2022년 09월 26일 (월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 내용 : 우대금리 변경 및 연금 입금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

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~ 제 5조 <생 략>	제1조 ~제 5조 <좌 동>	
제6조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에~<생 략>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4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	제6조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에~ <좌 동>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9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	우대금리 이율변경
1.<생 략>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	1.<좌 동>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	연금 입금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
2.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	2.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<삭 제>, 연금펀드	
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	3. 기타연금 :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	
제7조~제 8조 <생 략>	제7조~제 8조 <좌 동>	
부 칙	부 칙	
1.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	1.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	
2.<신 설>	2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	부칙추가